

평창 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을 위한  
**군의회 의견 청취안**

제출자 : 평창군수

# 평창군 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공원구역내에 위치한 다중 이용시설인 봉평면公所(성당)와 주택 등 기존 건축물 입지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 하고자 하며
-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 근린공원의 군 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가. 군 계획시설(창동공원) 면적 축소

(단위 : m<sup>2</sup>)

기 정	변 경	증.감	비 고
187,040	178,049	(감)8,991	-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 검토 : 별도의견 없음(p14 참조)
- 주민공람 : 2009. 5. 12 ~ 5. 26 (14일간)
- 공람방법 및 의견
  - 강원일보, 도민일보, 평창군 홈페이지, 봉평면 게시판 게재
  - 주민의견 없음

## 평창군 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안

1. 용도지역변경(안) : 변경 없음

2.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안)

가. 공원시설 결정(변경)

• 공원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창동공원	근린공원	창동리 산10번지 일원	187,040	감)8,991	178,049	74.11.20 강고-2766호	

• 공원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창동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면적</li> <li>- 기정 : 187,040m<sup>2</sup></li> <li>- 변경 : 178,049m<sup>2</sup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공원구역내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 부지에 대한 공원구역 축소</li> </ul>

### 3. 세부시설 조서

구 분	부지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건 축 물			공작물 (기)	비 고		
			동수 (동)	바닥면적 (㎡)	연면적 (㎡)				
계	기정	187,040	26,690	4	460	580	89	감)8,991 시설율: 14.3%→ 13.4%	
	변경	178,049	23,823	4	521	612	89		
기 반 시 설	소계	기정	6,420	6,420	-	-	-	-	감)882 -
		변경	5,538	5,538	-	-	-	-	
	도로	기정	5,360	5,360	-	-	-	-	감)592 -
		변경	4,768	4,768	-	-	-	-	
	광장	기정	1,060	1,060	-	-	-	-	감)290 -
		변경	770	770	-	-	-	-	
조경시설	기정	1,980	1,980	-	-	-	4	-	등벤치6기, 안내판1기, 섬돌10기, 명판1기
	변경	1,980	1,980	-	-	-	4		
휴양시설	기정	3,180	3,180	-	-	-	3	감)800	등벤치6기, 휴지통1기
	변경	2,380	2,380	-	-	-	2		
유희시설	기정	1,490	1,490	-	-	-	2	증)54	등벤치3기, 놀이기구5기
	변경	1,544	1,544	-	-	-	2		
운동시설	기정	5,690	5,690	2	220	220	2	감)278	체력단련, 기구7기, 등벤치6기
	변경	5,412	5,412	2	351	392	2		
교양시설	기정	740	740	-	-	-	3	-	파고라1기, 아외탁자12기, 안내판1기
	변경	740	740	-	-	-	3		
편익시설	기정	6,840	6,840	1	120	120	2	감)1,111	전망대, 전망데크, 파고라1기
	변경	5,729	5,729	1	120	120	2		
관리시설	기정	350	350	1	-	-	73	증)150	파고라1기, 표석1기
	변경	500	500	1	50	100	74		
녹 지	기정	160,350	-	-	-	-	-	감)6,124	
	변경	154,226	-	-	-	-	-		

• 세부시설조사

구분	부호	위 치 (창동1리)	부지면적 (㎡)	시설면적 (㎡)	구조	규모	건축물(㎡)		공작물 (기)	비 고			
							바닥 면적	연면적					
합 계	기정 변경	-	-	187,040	26,690	-	4동	460	580	89	감)8,991		
				178,049	23,823		4동	521	612	89			
기 반 시 설	계	기정 변경	-	-	6,420	6,420	-	-	-	-	-	감)882	
					5,538	5,538							
	도 로	기정 변경	-	전지역	5,360	5,360	-	-	-	-	-	감)592	
					4,768	4,768							
	광 장	기정 변경	가	산10	1,060	1,060	-	-	-	-	-	감)290	
					770	770							
		기정 변경	가-1	355-2	290	290	-	-	-	-	-	-	
폐지					-	-							
기정 변경	가-2	산10	770	770	-	-	-	-	-	-	-		
			가	산10								770	770
조 경 시 설	계	기정 변경	-	-	1,980	1,980	-	-	-	-	4	-	
					1,980	1,980					4		
	숲속정원	기정 변경	나-1	산2-7	1,030	1,030	-	-	-	-	-	-	
					1,030	1,030							
		기정 변경	나-2	산2-1	950	950	-	-	-	-	-	-	
950	950												
휴 양 시 설	계	기정 변경	다	다	3,180	3,180	-	-	-	-	3	감)800	
					2,380	2,380					2		
	휴 게 소	기정 변경	다-1	산4-1	800	800	-	-	-	-	1	감)800	
					폐지	-					-		
		기정 변경	다-2	산11-11	2,380	2,380	-	-	-	-	2	-	
다	산11-11				2,380	2,380							
유 희 시 설	계	기정 변경	-	-	1,490	1,490	-	-	-	-	2	증)54	
					1,544	1,544					2		
	숲 속 놀 이 터	기정 변경	라	산2-3	1,490	1,490	-	-	-	-	2	증)54	
1,544					1,544	2							
운 동 시 설	계	기정 변경	-	-	5,690	5,690	-	2동	220	220	2	감)278	
					5,412	5,412			351	392	2		
	테니스장	기정 변경	마	산10	2,810	2,810	S-P	1동	90	90	-	감)760	
					2,050	2,050			90	90			
	골 연 습 장	기정 변경	바	산10	2,460	2,460	S-P	1동	130	130	-	증)482	
					2,942	2,942			261	302			
체 력 단 련 장	기정 변경	사	산2	420	420	-	-	-	-	2	-		
				420	420					2			
교 양 시 설	계	기정 변경	-	-	740	740	-	-	-	-	3	-	
					740	740					3		
	숲속교실	기정 변경	아	산5	740	740	-	-	-	-	3	-	
					740	740					3		
편 의 시 설	계	기정 변경	-	-	6,840	6,840	-	1동	120	120	2	감)1,111	
					5,729	5,729			120	120	2		
	주 차 장	기정 변경	자	-	3,990	3,990	-	-	-	-	-	-	
					3,335	3,335							
		기정 변경	자-1	365-2	2,600	2,600	-	-	-	-	-	-	
					1,945	1,945							
			기정 변경	자-1	산2-5	1,390	1,390	-	-	-	-	-	-
						1,390	1,390						
	전 망 대	기정 변경	차	산5	1,880	1,880	-	-	-	-	1	-	
					1,880	1,880					1		
화 장 실	기정 변경	1	산10	970	970	철·콘	1동	120	120	1	감)456		
				514	514			120	120	1			
관 리 시 설	계	기정 변경	-	-	350	350	-	1동	120	240	73	증)150	
					500	500			50	100	74		
	관 리 사 무 소	기정 변경	2	산4-2	350	350	철·콘	1동	120	240	1	증)150	
					500	500			50	100	2		
가로등	기정	-	전지역	-	-	-	-	-	-	72	-		
녹 지	기정 변경	-	산5	160,350	-	-	-	-	-	-	-	감)6,124	
				154,226									

• 도로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연장 (m)	면적(m <sup>2</sup> )	기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합 계		-	-	1,594	5,360	-	-	-	감)592
변경					1,395	4,768				
기정	소 로	3류	1	6	149	1,100	진입도로	지구계	골프연습장	-
변경	소 로	3류	1	6	149	1,100	진입도로	지구계	골프연습장	
기정	산책로	계	-	-	1,445	4,260	-	-	-	감)592
변경	산책로					1,246				
기정	산책로		1	3	742	2,240	산책로	전망대	휴게공간	감)360
변경	산책로		1	3	632	1,880	산책로	전망대	주차장	
기정	산책로		2	3	86	250	산책로	전망대	숲속교실	-
변경	산책로		2	3	86	250	산책로	전망대	숲속교실	
기정	산책로		3	3	192	580	산책로	지구계	숲속교실	-
변경	산책로		3	3	192	580	산책로	지구계	숲속교실	
기정	산책로		4	3	293	880	산책로	산책로	테니스장	감)22
변경	산책로		4	3	284	858	산책로	산책로	테니스장	
기정	산책로		5	2	80	210	산책로	지구계	주차장	감)210
변경	산책로		폐지	-	-	-	-	-	-	
기정	산책로		6	2	52	100	산책로	지구계	주차장	-
변경	산책로		5	2	52	100	산책로	지구계	주차장	

※ 평창군고시 제2004-25호(2004. 1. 17)

#### 4. 토지조서

지목별 총괄표

구 분	계	전	도로	임야	수도용지
면적(m <sup>2</sup> )	178,049	10,441	283	167,068	257
구성비(%)	100	5.9	0.2	93.8	0.1

소유자별 총괄표

구 분	계	국유지	공유지	사유지
면 적(m <sup>2</sup> )	178,049	1,422	28,165	148,462
구성비(%)	100	0.8	15.8	83.4

지번별 편입토지조서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소유자	대장면적 (m <sup>2</sup> )	기정면적 (m <sup>2</sup> )	증감 (m <sup>2</sup> )	변경면적 (m <sup>2</sup> )	소유자명
1	창동리	산16-1	임	사유지	53,752	421	-	421	이창우
2	창동리	산2-7	임	사유지	11,037	9,377	-	9,377	김철모
3	창동리	산2-1	임	사유지	7,273	6,839	감)33	6,806	김철수
4	창동리	산2-2	임	사유지	9,763	9,763	-	9,763	김경식
5	창동리	373-19	전	사유지	436	364	-	364	김철모
6	창동리	산3	임	사유지	1,091	986	-	986	박영석외 4인
7	창동리	369-4	전	사유지	1,190	1,190	-	1,190	김경식
8	창동리	370	전	사유지	364	364	-	364	이정자
9	창동리	373-13	전	사유지	1,322	154	-	154	송태여
10	창동리	산2-5	임	사유지	881	881	-	881	김경식
11	창동리	369-1	전	사유지	4,410	784	-	784	김종익
12	창동리	산7-2	임	사유지	1,860	1,289	-	1,289	김영래
13	창동리	산8	임	국유지	1,587	1,376	-	1,376	국유지(건교부)
14	창동리	산12-1	임	사유지	14,235	1,298	감)899	399	이명우
15	창동리	산11-7	임	사유지	3,199	3,199	-	3,199	최돈하
16	창동리	152	전	사유지	625	625	-	625	이명우
17	창동리	324	전	공유지	2,931	2,931	-	2,931	평창군
18	창동리	산11-11	임	사유지	4,667	4,667	-	4,667	김항래
19	창동리	325-1	수	공유지	105	41	-	41	평창군
20	창동리	145-1	도	국유지	2,152	26	-	26	국유지(건교부)
21	창동리	323-9	전	공유지	199	199	-	199	평창군
22	창동리	323-8	수	공유지	186	49	-	49	평창군
23	창동리	324-1	수	공유지	61	37	-	37	평창군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소유자	대장면적 (㎡)	기정면적 (㎡)	증감 (㎡)	변경면적 (㎡)	소유자명
24	창동리	산11-10	수	공유지	933	130	-	130	평창군
25	창동리	산11-6	임	사유지	776	776	-	776	이인한
26	창동리	산11-5	임	사유지	1,294	1,294	-	1,294	최장근외 1인
27	창동리	151-5	전	사유지	1,098	810	감)781	29	이인한
28	창동리	산11-4	임	사유지	2,648	2,648	-	2,648	이인한
29	창동리	321-5	임	사유지	3,515	3,478	-	3,478	김시옥
30	창동리	151-9	도	공유지	409	149	감)5	144	평창군
31	창동리	151-10	전	공유지	123	6	-	6	평창군
32	창동리	산11-9	도	공유지	98	93	-	93	평창군
33	창동리	321-4	도	국유지	56	9	-	9	국유지(건교부)
34	원길리	산6	임	사유지	34,314	1,895	-	1,895	조영일
35	원길리	229-1	전	사유지	4,269	355	-	355	김남일
36	원길리	산1	임	사유지	9,025	7,650	감)2,803	4,847	김동린
37	원길리	산2	임	사유지	27,967	23,182	-	23,182	김동린
38	원길리	산5	임	사유지	24,992	24,992	-	24,992	조성규
39	원길리	230	전	사유지	1,907	1,822	-	1,822	최경원
40	원길리	산3	임	사유지	8,926	6,898	-	6,898	이성우
41	원길리	261	전	사유지	1,554	70	-	70	김성
42	창동리	산1	임	사유지	3,753	3,377	-	3,377	김철수
43	창동리	332-1	전	공유지	698	698	-	698	평창군
44	창동리	333-1	전	공유지	284	284	-	284	평창군
45	창동리	333-13	전	공유지	149	149	-	149	평창군
46	창동리	331	전	사유지	807	76	-	76	조백철
47	창동리	365-2	전	사유지	967	876	감)535	341	재단법인춘천 교구천주
48	창동리	366-9	도	국유지	11	11	-	11	국유지(건교부)
49	창동리	산5	임	공유지	3,861	3,961	-	3,961	평창군
50	창동리	산4-2	임	사유지	742	742	-	742	신경선
51	창동리	산7	임	사유지	7,992	7,387	-	7,387	최은하
52	창동리	산4-1	임	사유지	12,390	12,657	감)3,870	8,787	재단법인춘천 교구천주
53	창동리	산6	임	공유지	6,789	5,111	-	5,111	평창군
54	창동리	산10	임	공유지	32,852	14,332	-	14,332	평창군
55	창동리	산16-4	임	사유지	2,803	2,244	-	2,244	이건표
56	창동리	산16-3	임	사유지	11,953	11,953	-	11,953	평창군
57	창동리	367	대	사유지	413	25	감)25	-	김종익
58	창동리	365-3	대	사유지	225	9	감)9	-	재단법인춘천 교구천주
59	창동리	373-12	전	사유지	795	31	감)31	-	한상근
계					334,714	187,040	감)8,991	178,049	





## 5.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### ○ 관련부서 협의

- 재무과, 문화체육과, 관광경제과, 환경과, 산림과, 건설방재과  
상하수도 사업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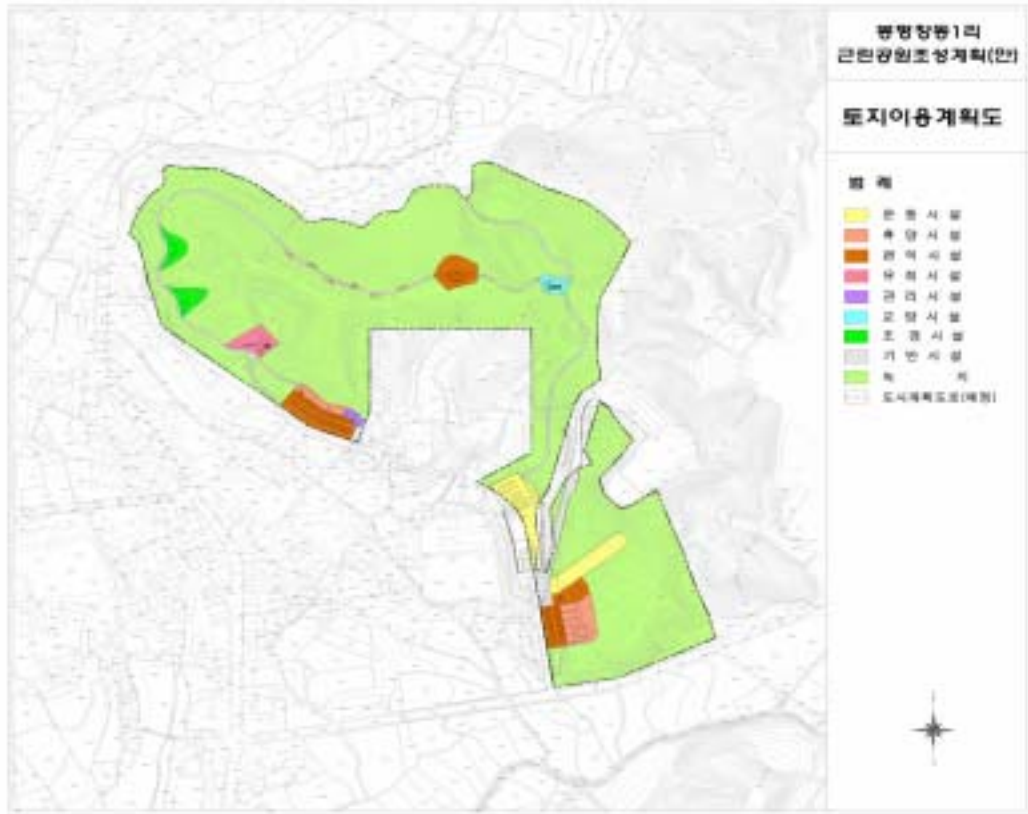
⇒ 별도의견 없음

- 농.축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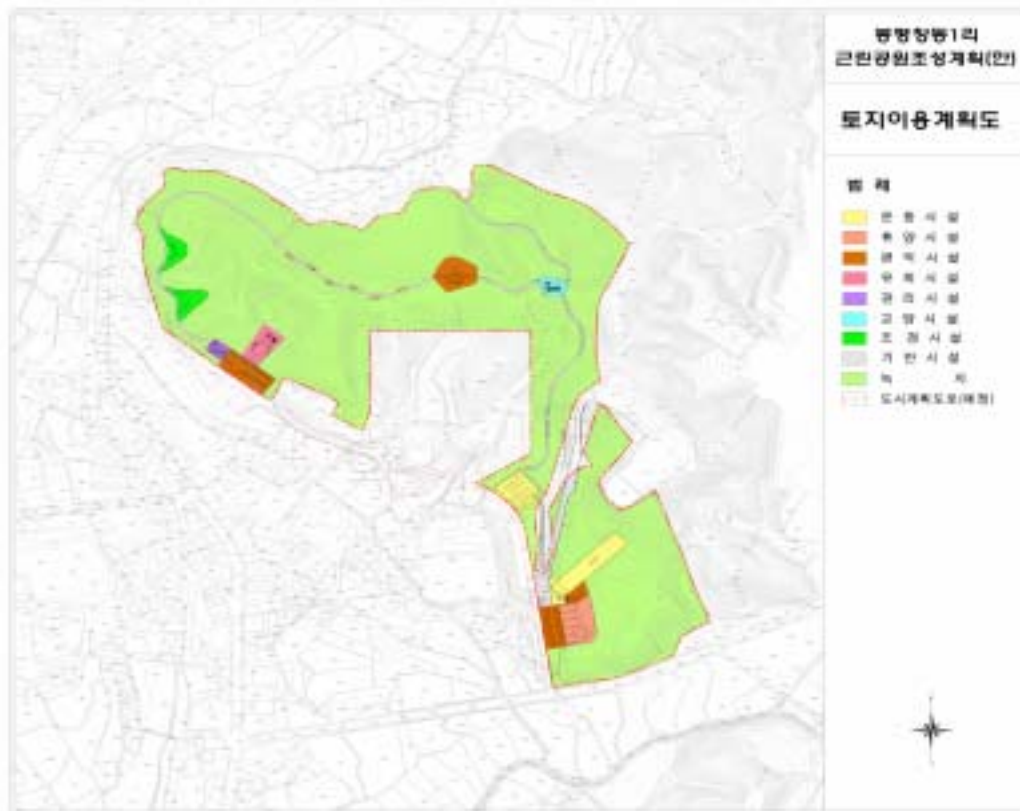
⇒ 강원도지사과 협의 요함(강원도지사과 협의예정)

## 6. 관련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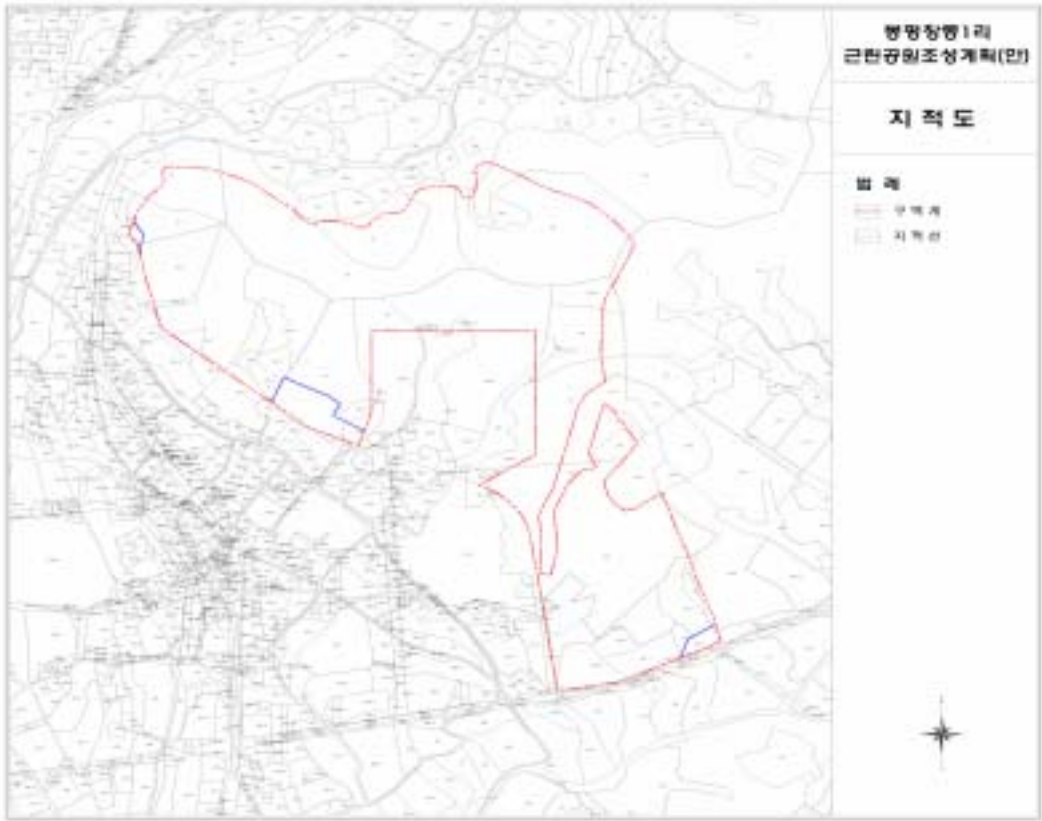
**토지이용계획도(기정)**



**토지이용계획도(변경)**



**지 적 도 (기정)**



**지 적 도 (변경)**



## 관련법규 발췌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
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⑤ 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

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.

1.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2.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
  - 가. 도로중 주간선도로(시·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·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·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  - 나. 철도중 도시철도
  - 다.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  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)
  - 마. 유통업무설비
  - 바. 학교중 대학
  - 사. 운동장
  - 아. 삭제 <2005.9.8>
  - 자.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  - 차. 화장장
  - 카. 공동묘지
  - 타. 납골시설
  - 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  - 하. 폐기물처리시설
  - 거. 수질오염방지시설